



가정통신문

부서담당: 보건교사 유주희
전화번호: TEL: 021) 6493-9606
FAX: 021) 6493-9600
홈페이지: <http://www.skoschool.com>

中國 上海市 閔行區 華漕鎮 聯友路 355號 (郵)201107 ☎ 보건실 6493-9606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절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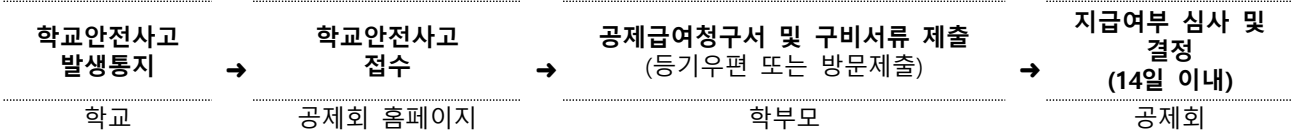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늘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활동 중 발생한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 부득이하게 학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의 치료를 받아 보상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과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교육활동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 학교장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2. 흐름도



※본교에서는 공제급여 청구를 학부모 대신 보건실에서 청구를 해 드리고 있으며 치료비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 사고 발생 후 3일이 내 담임 선생님께 알려 주십시오. 사고 통지는 학교를 통해 접수되고 있어 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보건일지의 기록에 따라 안전공제회 접수의 근거 자료가 됨을 알려 드립니다.

3. 공제급여[보상]의 종류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비 지급(2년을 넘지 않음)
장해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종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간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유족급여, 장의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지급
위로금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때 지급

4. 공제급여 지급 제한사유

- ① 자해 및 자살
- ② 의료기간 중에 치료지시 거부 및 방해
- ③ 가해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또는 배상
- ④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지 않은 질병

5.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보건실로 제출할 서류)

- 병원 진단서(또는 진료기록지)와 화표
- 그외 추가서류(여권사본, 통장계좌 사본, 동의서, 위임장)

2025. 4. 23.

상 해 한 국 학 교 장(직인생략)